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11.

기획재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1월 14일, 진성준의원 등 15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4회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4.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9.)

상정,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16.)

상정, 심사

제429회국회(정기회)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25.9.22.)

상정, 심사, 의결(수정)

제429회국회(정기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2025.9.2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진성준의원)

현행법은 조달청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정보, 계약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수요기관의 잘못된 관계 법령 해석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계약을 발주·체결하는 ‘자체조달’의 경우에는 조달청이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어 조달청이 잘못된 정보의 수정 및 변경을 요구하거나, 유사한 사례의 방지를 위하여 부당한 계약의 사례를 공지하는 등의 적극적인 관리·운영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조달청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에 대한 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시정토록하여 조달업무의 안정성·신뢰성 및 공정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검토보고서 참조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정태호)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조달청이 계약의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은 조달청의 수정·변경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쳤음

- [붙임]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9. .

제 안 자 : 기획재정위원장

수정이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이미 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 조달청이 계약의 수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은 조달청의 수정·변경 요청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수정함.

수정주요내용

가. 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은 조달청의 수정·변경 요청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16조 제4항 및 안 부칙 제2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제4항 중 “계약 사항”을 “계약 사항(계약 체결이 완료된 것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 중 “공고를 진행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중인”을 “공고 또는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인”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전자조달시스템(제14조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에 관계 법령 등의 잘못된 해석 등으로 인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에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공지할</u>	제16조(계약 관련 정보 등의 관리 및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 --- <u>계약 사항(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u> ----- ----- ----- ----- ----- ----- -----.

<u><신 설></u>	<u>수 있다.</u>	
	<u>부 칙</u> <u>제2조(부당한 입찰 공</u> <u>고 및 계약 사항에</u> <u>관한 적용례) 제16</u> <u>조제4항의 개정규정</u> <u>은 이 법 시행 전에</u> <u>전자조달시스템을</u> <u>이용하여 입찰 공고</u> <u>를 진행중이거나</u> <u>계약을 체결하여</u> <u>진행중인 경우에도</u> <u>적용한다.</u>	<u>부 칙</u> <u>제2조(부당한 입찰 공</u> <u>고 및 계약 사항에</u> <u>관한 적용례) ----</u> <u>-----</u> <u>-----</u> <u>-----</u> <u>-----공 고</u> <u>또는 계약 체결이</u> <u>진행 중인-----</u> <u>-----</u> <u>----.</u>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중 “요청”을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요기관의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 잘못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달청장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공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잘못이 있는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의 수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공

고 또는 계약 체결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u>요청</u>) (생략) <u><신 설></u>	제13조(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 체결의 <u>요청 등</u>) ① (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조달청장은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요 기관의 입찰 공고 또는 계약 사항(계약 체결이 완료된 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관계 법령 해석의 오류 등으로 잘못 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 자에게 이에 대한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조달청장은 유사한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 조달시스템에 이와 관련한 사 항을 공지할 수 있다.</u>